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담배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제외품목을 담배에 부과하는 타 부담금 품목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88호, 2015. 2. 3. 공포·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칙규정에 2015. 1. 1.부터 2015. 2.2.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정한 부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4. 5. 23. 선고 2021두35834)이 선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 나. 대법원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담배 폐기물부담금 소급 적용 근거규정을 정비함(안 부칙 제26088호 제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를 “담배(”로 한다.

부칙 (제26088호, 2015. 2. 3.)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3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같은 표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재 료·용기를 말한다. 1. ~ 4. (생 락) 5. <u>담배</u>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 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 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 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6.·7. (생 락) ② (생 락) 부칙 (제26088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 례) 별표 2 제5호 및 같은 표 비 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담배</u> (----- ----- ----- ----- ----- 6.·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26088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 례) ①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 정은 2015년 2월 3일 이후 제조 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같은 표 비고 제5호 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제3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 조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4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 조치)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	(044) 201 - 7381